##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9 발의연월일: 2024. 6. 27.

발 의 자:이훈기·염태영·김 현

조인철 • 박정현 • 김용만

박지원 · 강준현 · 양부남

민형배 · 김주영 · 박희승

김교흥 • 서영교 • 김 윤

정준호 의원(16명)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 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여 그 부담을 분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인 폭염·한파·폭우·폭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존권을 위협받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최근 유례없이 장기간 높은 강도로 지속되는 폭염·한파로 인한 '쪽 방촌' 주민이나 옥외근로자의 사망 사고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자연 재해에 따른 피해도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낮은 예측가능성과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피해의 정도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음.

이에 '취약계층'과 그 중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인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호대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제43조의2 및 제43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의2. "취약계층"이란 기후위기가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자연재해 등 기후영향에 취약한 계층·지역이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산업과 그 종사자 등 기후위기의 직·간접적 영향에 취약한 산업·계층·지역 등을 말한다.
- 12의3.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기후위기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폭염·한파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노인·영유아·어린이·장 애인과 같은 생물학적 취약계층
  - 나. 옥외근로자·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 등과 같은 사회·경제 적 취약계층
  - 다. 상습수해지역이나 노후화주택과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 또는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

- 제10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 제고대책에 관한 사항
- 제11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 제고대책에 관한 사항
-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3조의2(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 제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자연재해 노출 및 피해와 적응역량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 시기·주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의3(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보호대책)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적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하 "기후위기 취약계층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중 전기요금 인하 등 유관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 ④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시행과 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취약한 계층"을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정부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10조제2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 후위기 취약계층의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기 존의 국가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가기본계획이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1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후위기 취약계층 의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시·도계획

- 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③ 시·군·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도계획이 변경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시·도계획의 변경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시 ·군·구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취약계층"이란 기후위기
	가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자연
	재해 등 기후영향에 취약한
	계층ㆍ지역이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산업
	<u>구조 전환 과정에서 직·간접</u>
	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산업과 그 종사자 등 기후
	위기의 직·간접적 영향에 취
	약한 산업ㆍ계층ㆍ지역 등을
	<u>말한다.</u>
<u>&lt;신 설&gt;</u>	<u>12의3. "기후위기 취약계층"이</u>
	<u>란 기후위기로 인한 부정적</u>
	영향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
	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u>가. 폭염·한파 등 자연재해</u>
	<u>에 취약한 노인·영유아·</u>
	어린이 · 장애인과 같은 생
	물학적 취약계층
	<u>나.</u> 옥외근로자·기초생활수

13. ~ 17. (생 략)

-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 략)
  -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신 설>

6. ~ 11. (생 략)

③ ~ ⑤ (생 략)

- ① (생략)
- ② 시 · 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신 설>

7. ~ 11. (생 략)

급자・독거노인 등과 같은 사회 · 경제적 취약계층

다. 상습수해지역이나 노후화 주택과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 또는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

13. ~ 17. (현행과 같음)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 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5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자 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 제고 대책에 관한 사항

- 6. ~ 11. (현행과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 ① (현행과 같음)

- 1. ~ 3. (현행과 같음)
- 3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자 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 제고 대책에 관한 사항
- 7. ~ 11.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u><신 설></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기후위기 취약계층 실 태조사) ①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 제 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 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취약계 층의 자연재해 노출 및 피해와 적응역량 전반에 대한 실태조 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 시기·주기, 방법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3(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보호대책) ①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신 설>

의 기후위기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적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하"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43조의2제1항에따른 실태조사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추진하는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 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중 전기요금 인하 등 유관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대 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 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소관 공공기 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 된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 책의 시행과 제3항에 따른 협 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제 마련)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① -----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 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 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 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
<u>.</u>
② (현행과 같음)